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9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전현희 · 유동수 · 소병훈
황정아 · 남인순 · 이학영
이건태 · 홍기원 · 김병주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민자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읍·면·동 단위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2.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주민총회 운영 및 주민 의견의 수렴·반영
4.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기구 운영
5.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6.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사무에 대한 협의·협력
7. 기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주민자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읍·면·동 단위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u> <u>2.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u> <u>3. 주민총회 운영 및 주민 의견의 수렴·반영</u> <u>4.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기구 운영</u> <u>5.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u>

체의 장이 위임·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6.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사
무에 대한 협의·협력

7. 기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
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
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
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
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
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
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
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시설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